

관세법 기본이론 교재 정오표 2025.07.17.

1. p33 4. 과세물건 확정 시기(법 제16조) - 오타정정

수정전	수정후
(9)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 해당 물품이 도난 되거나 분실될 때	(9)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 해당 물품이 도난 되거나 분실된 때

2. p34 5. 적용 법령과 과세환율(법 제17, 제8조) - 오타정정

수정전	수정후
(2) 과세환율 [법 제18조]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법 제17조(적용 법령)에 따른 날(보세건설자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2) 과세환율 [법 제18조]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법 제17조(적용 법령)에 따른 날(보세건설자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3. p36 2) 특별납세의무자(법 제19조 제1항) - 굵은글씨

수정전	수정후
① 외국물품인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차량용품,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국경출입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 : 하역허가를 받은 자	① 외국물품인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차량용품,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국경출입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 : 하역허가를 받은 자

4. p148 (6) 자료제출 - 오타정정

수정전	수정후
② 덤프물품의 수입사실과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3부	② 덤프물품의 수입사실과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3부

5. p158 (1) 원칙적인 부과방법 √ 핵심체크 - 오타정정

수정전	수정후
① 덤프방지관세를 정률세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덤프률의 범위 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① 덤프방지관세를 정률세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덤프률의 범위 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6. p159 (2)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에 대한 부과방법 - 제목삭제

수정전	수정후
(2)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에 대한 부과방법	(2)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에 대한 부과방법

7. p159 (3) 신규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방법 - 제목수정

수정전	수정후
(3) 신규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방법	(2) 조사대상 미선정 공급자 및 신규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방법

8. p188 (1) 원칙적인 부과방법 - 띄어쓰기 및 오타정정

수정전	수정후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계관세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보조금률의 범위 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다.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계관세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보조금률의 범위 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다.

8-2. p209

수정전	수정후
특별긴급관세액 계산식에서 세율 퍼센트 앞에 X(곱하기) 누락	아래와 같이 X(곱하기) 추가 수정

(4) 가격기준

가격기준에 따라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해당 양허세율에 따른 관세에 다음 표의 금액을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수입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기준가격 대비 수입가격의 하락률	특별긴급관세액
10퍼센트 초과 40퍼센트 이하	기준가격 X (하락률 - 10퍼센트포인트) X 30퍼센트
40퍼센트 초과 60퍼센트 이하	기준가격 X [9퍼센트 + (하락률 - 40퍼센트포인트) X 50퍼센트]
60퍼센트 초과 70퍼센트 이하	기준가격 X [19퍼센트 + (하락률 - 60퍼센트포인트) X 70퍼센트]
70퍼센트 초과	기준가격 X [29.5퍼센트 + (하락률 - 70퍼센트포인트) X 90퍼센트]

9. p252 1.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법 제92조) - 오타정정

수정전	수정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할 법인을 포함하다)가 환경오염(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을 측정하거나 분석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기구 등이 <u>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u>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환경오염(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을 측정하거나 분석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기구 등이 <u>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u>
--	--

10. p262 3.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신청(시행규칙 제55조) - 오타정정

수정전	수정후
상기 1. ①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상기 1. (1)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1. p341 (1) 감치대상(법 제116조의4 제1항) - 오타정정

수정전	수정후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